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A 3-6	42

## 연구논문 ②

### 국제노동력 이동과 외국인의 국내 취업\*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김종일·이상철·이종구·설동훈

(건국대 교수)·(제주대 교수)·(성공회대 교수)·(서울대 강사)\*\*

#### 1. 문제제기

현재 한국에는 약 10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하고 있다. 그들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한국의 노동자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3D (difficult, dangerous, dirty) 업종에 종사함으로써 한국사회에서 부족한 일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인간이 아닌 단순한 '일손'으로만 대접하여 그들의 인권이 사회문제화되기도 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침해에 집단적으로 항의하였던 최근의 대표적인 사건만 들어도, 산재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1994년 1월 9일부터 2월 9일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실에서 농성을 하였고, 네팔인 산업기술연수생들이 1995년 1월 9일부터 17일까지 명동성당에서 부당한 노동현실을 고발하는 농성을 벌인 것을 기억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취업이 단순한 노동력의

\* 이 논문은 199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필자들은 모두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다.

유입 이상을 의미함을 나타낸다.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체제의 출범에 즈음하여 한국에서도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세계인이 됩시다"라는 캠페인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화의 담지자로 이해될 수 있다.

국내에 취업중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과정과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은 한국의 노동문제를 국제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토대로 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취업이 미치는 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2. 이민노동자에 대한 연구시각

##### 1) 노동력의 국제 이동

국제노동력 이동현상을 파악하는 이론적 접근으로 대표적인 것은 배출-흡인론과 세계체제이론이다(이혜경, 1994b; 설동훈, 1992b). 배출-흡인론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을 떠나도록 개인을 강제하는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요인들(push factors)을 나열하거나, 혹은 노동력의 유입국에서 그들을 끌어들이는 요인들(pull factors)의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이론은 노동력의 송출국에서의 무제한적 노동공급을 전제한다. 노동력 유입국에 유리한 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노동력 유입국에서 수요가 존재할 때 노동자들의 국제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력 송출국의 높은 실업률, 저임금, 정치적 탄압 등의 배출요인, 노동력 유입국의 폭넓은 취업기회, 높은 임금과 삶의 질 등의 흡인요인, 그리고 송출국과 유입국간의 지리적·문화적 거리 등 매개요인을 나열하며, 노동력 이동의 밑바닥에는 개인의 상승이동지향적인 동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연구

의 초점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개인적 특징과 이동경험에 주로 맞추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이론을 원용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의 해외취업 동기 및 한국선택 이유’에 대한 질문문항을 개발하였다.

배출-흡인이론은 특정한 역사적 단계를 상정하지 않고서, 국제노동력 이동을 노동력의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파악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저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자연스럽게 유입해오는 것으로 보며, 따라서 외국인 노동력을 ‘부족한 선진국의 노동력을 보충하는 존재’로 간주한다. 외국인 노동자들 자신이 공간적 장애를 극복하고 경제적 공간에서 노동력 자원을 재분배하는 것이 된다. 마치 자력에 이끌려 쇠붙이가 움직이는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의 고용을 찾아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열망하며 이동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내 인력으로 충원이 되지 않는 직업을 채우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몰려온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배출이론의 한계는 그 물역사성에서 나타난다(森田桐郎, 1987).

아시아 지역에는 배출요인이 항상적으로 있었으나, 어느 국가에서 인력난으로 대표되는 흡인요인이 생긴다고 해서 국제노동력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예컨대 1970년대 일본에 인력난이 발생하였을 때, 아시아 각국에 성취동기가 강한 노동력들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이동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한계는 세계체제이론으로 보완될 수 있다. 즉 1970년대의 일본은 세계체제상 중심부 국가로 미쳐 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로 해석된다. 또한 세계체제이론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라는 현상은 세계자본주의 체계 내부에서 한국의 위상이 변화하고 있는 지표로 해석된다.

이처럼 세계체제이론은 이러한 개인적 특성과 경험을 자본주의적 발전이라는 보다 넓은 동심원내에서의 기능으로 이해하면서 더욱 심화시킨다(Sassen, 1988). 특히 이 이론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저렴하다는 점’과 ‘그들이 정치적 통제에 취약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세계체제이론에 의하면 국제노동력 이동이란 자본주의의 확대로 어느 국가가 세계경

제체제속으로 편입된 후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때 주변부국의 저임노동력이 중심부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노동력 이동이라는 행위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개인들의 단순한 이동 이상을 나타낸다. 아펠바움과 제레피(Appelbaum and Gereffi, 1994)는 자본주의의 발달, 제국주의 국가의 침투, 자본의 침투, 노동력의 이동 등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슬임을 파악하고 있다. 그는 의복산업을 연구하면서 상품의 이동이 결과적으로 노동력 이동을 낳는 과정을 상품연쇄(commodity chain)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필자들은 흡인-배출이론과 세계체제이론의 설명틀을 결합하여 임금수준 격차와 사회적 네트워크에 초점을 둔 연구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였다.

## 2) 외국인 노동자와 유입국 노동시장

노동력 유입국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관계를 둘러싸고 ‘경쟁적이고 대체가능하다’고 전제하는 입장과 ‘서로 다른 부문으로 분단되어 있다’고 파악하는 입장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 박호환(1992)은 전자를 ‘대체가설’로 후자를 ‘분단가설’로 지칭하는데, 그것이 각각 기반하고 있는 배경은 경쟁노동시장이론과 분절노동시장이론이다.

경쟁노동시장이론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국에 들어오면 국내노동자들의 어떤 작업이든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국가간 노동의 균질성을 전제로 한다.

반면, 분절노동시장이론은 국가간 노동력이 균질적이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즉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제2차 노동시장이 형성되는데,<sup>1)</sup> 이 곳에 필요한 노동력 수요는 존재하지만 국내 노동력 공급

1) 피오레(Piore, 1975)는 이를 ‘숙련이 필요 없고, 급료가 대부분 낮은 수준이고, 사회적 신분이 낮다는 것을 나타내며, 흔히 힘들고 따분한 작업환경에 상당한 위협이 뒤따르며, 높은 임금을 받는 좀더 나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는 거의 바랄 수 없는’ 일(works)로 묘사한다.

이 부족하거나 고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외국인 노동시장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즉 선진 공업국의 경우 외국인 노동력이 사용되는 시점은 노동력의 특정 부문에서 내국인 노동력이 고갈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이농민이 격감하고, 또한 취학률의 상승으로 인하여 10대의 노동력 참가율이 현저하게 하락함에 따라 제2차 노동시장에서 인력난이 발생하였다. 또한 잔존하고 있는 내국인 노동력도 기존 고용조건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제2차 노동시장의 입식구(port of entry)를 외국인에게 개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들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분절노동시장이론에 입각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 3. 연구내용과 자료

필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왜, 어떻게 한국으로 유입되었는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유입은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쳤는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재편의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설정하였다.<sup>2)</sup>

<표 1>에 나타난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는 체류 자격별로는 산업기술연수생과 불법체류자로 구분되고, 민족별로는 한국계 동포 외국인과 비한국계 외국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민족’의 축으로 살펴보면, 국내에 유입되어 있는 해외 동포는 주로 중국 출신이므로 중국교포와 기타 외국인의 두 범주로 압축할 수 있다. 중국 교포의 국적은 명백히 ‘중국’이므로 외국인이 분명하고, 단지 민족만이 ‘조선

2) 이러한 문제관심에 따라 시행된 연구조사의 결과는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본 논문)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기조와 대안’으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또한 국제 비교 시각을 정립하기 위하여 ‘일본을 비롯한 각국의 사례연구’를 시도하였다. 나머지 두 논문도 《경제와사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표 1>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적 분류

체류 자격	민족	중국교포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I	II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III		IV

족’일 따름이다.<sup>3)</sup> 국적별 외국인 노동자수는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은 필리핀·방글라데시·네팔·파키스탄 등의 순이다(<표 2> 참조).

<표 2> 국내 외국인 노동자 수(1994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명)

구분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기타	전체
불법체류자	18,676	7,538	5,256	2,087	2,277	—	—	—	11,701	47,535
산업기술연수생 (‘94년연수생)	12,663 (7,528)	5,050 (2,639)	— (1,521)	— (767)	— (617)	1,310 (935)	1,585 (930)	403 (0)	7,317 (3,560)	28,328 (18,497)
계	31,339	12,588	—	—	—	—	—	—	19,018	75,863

주: 1994년 제1차 산업기술연수생 중 기타는 베트남(2523), 미얀마(788), 이란(249)의 합임.  
—는 미확인 자료.

자료: 법무부, 1995.

명목적으로, 산업기술연수생은 ‘기업체에서 산업상의 기술·기능을 연수받는 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수내용과는 전혀 관계없는 분야에서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일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대부분은 국내 제조업체에서 단순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나 합법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편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불법체류자는 관광 혹은 방문 등의 단기체류 사증을 갖고 입국하여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일하고 있는 경우, 연수 사증을 발급받고

3) 조선족 중국인은 한국에서는 중국인임을, 중국에서는 조선족임을 강하게 느끼는 이중적 정체성(double identity)을 소유하고 있다(황승연, 1994).

입국하여 직장을 이탈한 경우, 내지 아무런 사증도 없이 밀입국한 경우(김용삼, 1995)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국적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 등의 근거로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체류 자격이 불법이라는 점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sup>4)</sup>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주로 표본조사자료인데, 그것들은 필자들이 직접 수행한 조사연구와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기준의 보고서 및 원자료이다. 필자들은 두 가지의 질문지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 취업에 대한 내국인 노동자들의 태도 조사이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 조사는 그들이 불법체류자이거나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두 유형 모두 접근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필자들은 이들이 집결하는 장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 그들 중에서 조사원을 선정한 후, 외국인 조사원에게 자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시켰다. 그들을 만난 장소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종교행사를 거행하는 성당이나 교회, 사찰 및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피난처 등이었다. 표집방법은 사실상 비례적인 확률 표집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신국적별로 할당을 준 후(quota sampling), 최종 조사대상자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실시하였다. 이는 한 사람의 외국인 노동자를 면접한 경우, 그로부터 다른 피면접자를 계속 소개받는 방법이다. 조사는 1994년 11월부터 1995년 2월까지 4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질문지 수는 393부이다.

다음, 내국인 노동자들의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태도 조사는 1994년 8월에 수원, 안양, 안산 등지의 완성차 업체 및 자동차 부품업체의 노동자 2,72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설동훈, 1994c). 이 조사에 응한 업체들은 이른바

4) 이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체류중인 것은 사실이나,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한국 노동법상 정당하게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규정상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D 업종이 아니고, 그 규모 면에서도 영세기업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적도 없고 계획도 없는 업체가 70.0%에 이른다. 이 업체 소속 노동자 비율은 82.2%로서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는 상태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표본의 성격과 이동 배경

필자들이 조사한 자료를 통하여<sup>5)</sup>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표 3>). 표집과정 자체에서 사실상의 무작위 추출이 이루어졌으므로 같은 출신지역 내부에서는 모집단의 특성이 고르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별로는 중국교포와 필리핀 출신의 경우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산업기술연수생들이 중국교포를 제외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보다 여성 비율이 높다.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중국교포 불법체류자 집단이다. 반면,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출신의 여성 취업자는 한 명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회교 율법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령 면에서는 중국교포들은 40세를 초과하는 중년층이 대다수를 이루지만, 기타 외국인들은 20대 후반의 청년층이다. 또 불법체류자들의 평균 연령이 산업기술연수생들보다 높다. 연령은 혼인 상태와 어느 정도 관련을 가진다. 기혼자 비율의 면에서 중국교포들은 81.0%가 기혼자이고, 기타 외국인들은 약 30~40%만 기혼자이다. 한편, 불법체류자들에 비하여 연수생들은

5) 중국교포 산업기술연수생은 한 명밖에 표집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표 1>에 제시한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분류 중 III과 IV를 하나로 합칠 수밖에 없었다. 중국교포 불법체류자 104명, 기타 외국인 불법체류자 221명, 산업기술연수생 68명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표집결과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신국가별·체류 자격별 분포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이동과정 및 국내 생활상태를 파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연구를 계속 진행하였다.

미혼자 비율이 훨씬 높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교육년수는 10년内外로 대략 고등학교 정도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인들의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의 본국에서의 식구수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이 8.4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교포는 4.5명으로 가장 적다. 체류 자격별로는 기타 외국인 불법체  
류자의 식구수가 7.2명으로 가장 많고, 산업연수생은 6.6명이다. 중국교포들  
의 식구수가 적은 것은 중국에서의 강제적인 가족계획정책 추진 때문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표 3> 조사 대상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 특성

구분 주요 변수	민족·체류 자격			국적					전체
	중국교포 불법	기타 외국불법	산업기술 연수생	중국교포	필리핀	방글라 데시 파키스탄	네팔	기타	
남자 비율(%)	59.6	86.9	58.8	60.0	57.1	100.0	83.9	91.9	74.6
평균 연령(세)	43.4	29.8	27.0	43.4	30.8	29.2	27.8	28.6	32.9
기혼자 비율(%)	80.8	41.6	28.8	81.0	47.5	27.5	39.3	29.7	49.9
교육년수(년)	10.6	10.6	11.6	10.6	12.1	10.1	9.6	12.2	10.7
식구 수(명)	4.6	7.2	6.6	4.5	6.9	8.4	6.9	6.3	6.4
본국 거주지: 도시(%)	75.0	43.7	64.5	75.2	45.5	36.7	45.5	73.5	55.0
본국 출생자: 도시(%)	46.9	39.3	50.0	46.4	36.4	34.0	37.8	78.8	42.9
본국 실업자 비율(%)	17.7	21.3	18.3	17.5	19.2	26.1	23.1	11.4	20.2
이동 경험률(%)	32.9	48.7	49.2	33.8	51.6	58.1	50.0	25.0	44.6
제3국 경유율(%)	3.0	48.8	12.5	2.9	8.9	72.0	50.0	37.8	30.4
해외여행 경험률(%)	11.9	56.9	25.4	11.8	30.3	66.7	59.1	41.9	40.9
제3국 취업률(%)	5.6	18.5	12.5	5.6	17.7	12.2	21.5	11.4	14.4
제3국 취업계획률(%)	15.7	36.4	53.2	16.7	60.0	28.0	32.1	30.0	33.7
평균 입국비용(US\$)	1147.4	2005.5	1591.2	1417.4	1807.9	2619.7	1759.7	1790.4	1834.8
조사대상자수(N)	104	221	68	105	84	51	112	37	393

본국에서의 거주지역 규모는 중국교포는 도시 출신이 훨씬 많은 데 비해, 기타 외국인들은 오히려 농촌 출신이 더 많다. 한편 출생지와 거주지를 비교해 볼 때 농촌에서 도시로 이사를 한 경험이 꽤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을 위하여 농촌에서 도시로 옮겨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은 58.1%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그렇다”고 대답한 중국교포들은 33.1%에 불과하다.

“본국에서 취업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80% 이상이 취업하고 있었다고 응답한다. 본국에서 실업자로 있었던 사람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평균보다 높은 국가는 방글라데시·파키스탄·네팔·필리핀 등이다.

“한국에 입국할 때 제3국을 경유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뉜다. 중국교포와 필리핀인들은 90% 이상이 곧장 입국하였지만, 방글라데시·파키스탄·네팔인들은 약 50~70%가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해외여행을 경험한 비율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한국에 유입된 방글라데시·파키스탄·네팔 사람들의 60~70%는 이미 과거에 해외 여행 경험이 있다. 또한 꽤 많은 방글라데시·파키스탄·네팔인들은 제3국에서 취업한 경험도 있다.

한편, 과반수를 상회하는 필리핀 출신 노동자들(60.0%)은 한국을 떠나 제3국에 취업하려 가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기술연수생들이 불법취업자들보다 ‘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취업하려 가기’를 더 크게 희망한다.

한국에 오기까지 소요된 비용은 미국 돈으로 대략 1,835달러 정도인데,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인의 입국비용이 가장 많고, 중국교포들의 입국비용이 가장 적다. 기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취업비용이 가장 많고, 다음이 연수생이다.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본국에 있던 시절의 사회계급은 중간계급(53.6%), 노동계급(25.9%), 중상계급(12.0%), 하층계급(5.1%), 상층계급(3.5%)의 순이다. 가족의 경제적 상태도 평균 정도가 60.1%로 가장 많고, 평균 이상이 15.5%, 평균 이하가 24.5%이다.

<표 4>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외취업을 결정하고 대상 국가로 한 국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돈을 벌고”(87.3%),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63.9%), “지식·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51.6%) 해외 취업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돈을 벌기 위한 동기”가 가장 부각되는 집단은 기타 외국인 불법체류자이고, 산업기술연수생은 “기술·지식의 축적”

국교포는  
적 높다.

%
87.3
63.9
51.6
22.1
21.9
10.1
6.0
4.6
60.8
39.2
38.4
31.1
26.3
24.6
15.7
13.7
7.0
52.3
50.0
49.4
29.2
22.5
20.5
14.5
10.7
5.8
70.5
53.3
38.9
35.5
16.6
16.6
12.0
4.8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국을 선택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국에서 취업하기가 쉽기 때문에”(60.8%), “한국에 친근감이 가기 때문에”(39.2%), “임금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38.4%), “입국 사증을 받기가 비교적 쉬우므로”(31.1%)의 순으로 많다. 산업연수생과 기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한국을 해외 취업지로 선택한 이유로 “취업의 용이함”을 주로 지적하지만, 중국교포 불법체류자들은 “한국인 친구·친지 때문” 내지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많이 언급한다. 또한 연수생과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한국 입국 사증 발급의 유용성을 강조하지만, 중국교포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사증 발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 이웃 사람”(52.3%)에게서 주로 얻었으며, 또한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경기”(50.0%) 및 “언론매체의 뉴스 혹은 보도기사”(49.4%)를 통하여 한국을 알게 되었다고 밝힌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들과는 달리 산업기술연수생들은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 이웃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은 비율이 매우 낮고 대신에 “본국 언론매체의 뉴스”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스포츠 경기” 및 “본국 정부의 홍보”를 많이 지적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의 취업에 대한 정보를 얻은 주요 통로는 친척·친지(70.5%), 이웃사람(53.3%), 직장동료(38.9%) 및 언론매체(35.5%) 등이다. 체류 자격별로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데, 다만 산업기술연수생들은 직장동료가 가장 주된 통로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 5. 외국인 노동자의 일과 삶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식당·농장 등에서 단순 미숙련 노동력으로 일하고 있다(설동훈, 1992b).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사업체는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영세업체인 반면, 산업기술연수생을 고용되어 있는 업체는 평균 150명 정도인

중견·중소기업이다. 본 조사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중에서는 중국교포가 취업중인 업체의 규모(44명)가 기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중인 곳(28명)보다 훨씬 크다. 영세기업은 내국인 노동자를 유인할 만한 임금·고용 안정성·노동조건·복지혜택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내국인 노동자들이 가급적 취업을 기피하는 곳으로,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곳이다. 그만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이 곳의 취업기회는 개방되어 있다. 그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세기업에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업종은 출신국별로 차이가 많은데, 중국교포들의 경우 남자는 건설노무자로 여자는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기타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취업하고 있는 업종은 섬유·봉제·의류·피혁 제조업이 가장 많고, 다음에 플라스틱, 가구·목재, 전자 부품, 화학, 가방 등의 제조업 순이다. 연수생의 취업업종은 섬유·의복을 비롯한 인력부족률이 5.0% 이상인 21개 제조업이다(설동훈, 1994b 참조).

외국인 노동자들의 직종은 흔히 '시다'(helper)라고 불리는 작업보조가 가장 많고, 나머지도 단순노동자 내지 단순기계조작공·단순조립공과 잡역부로 요약될 수 있다. 한마디로 단순·미숙련 노동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압도적 높다.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제품에 따라 작업과정이 세분되므로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진 직종으로 세분되지만, 이들이 담당하는 일은 특정한 숙련을 요하지 않는 단순·반복적인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설동훈, 1992b 참조).

외국인 노동자들은 직장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정규적인 취업이 인정되지 못하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파생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국내에서 직업생활을 하면서 체불임금, 여권 등 출입국 관련 사항, 건강,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표 5>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이 1992년 7~8월에 자양동성당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충을 상담 받은 결과이다. 상담을 해 온 사람의 대부분인 91.3%가 임금체불을 당하였으며, 여권을 기업주에게 차압당한 사례도 11.9%에 달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4.6%

<표 5> 외국인 노동 상담 내역, 1992년

(단위: %, N=369)

임금	여권	건강	산업재해	주거
91.3	11.9	4.6	3.0	2.2

주: 복수 선택이므로 합이 100%를 초과한다.

자료: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1992.

이며,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도 3.0% 정도 있다. 주거문제를 호소해 온 사람은 약 2.2%정도이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초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회적 생활화 한 다음에도 문제의 성격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표 6>은 1994년 1년 동안 천주교 서울대교구 외국인 노동자상담소에서 상담한 외국인 3,523명의 상담내용을 그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다. 내용적으로 종교활동이나 조직활동을 의미하는 '행사'를 제외한 노동상담에 해당하는 내용 가운데는 역시 체불임금문제가 가장 많아 980건(27.8%)이었고, 의료문제가 116건(4.7%), 산업재해를 입고 그에 대한 보상방안을 상담한 경우도 116건(3.3%)에 달하였다.

<표 6> 외국인 노동자 상담 내역, 1994년

(단위: %, N=3,523)

행사	체불임금	출입국	의료	산업재해	한글반운영	항공권환불	폭행
28.6	27.8	18.3	4.7	3.3	3.2	2.3	1.1

자료: 천주교 서울대교구 외국인 노동자상담소, 1994.

본 조사 결과인 <표 7>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호소한 문제를 보면, 장시간 노동(63.8%), 저임금(41.1), 체불임금(23.6%), 열악한 작업조건(21.7%),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19.4%), 한국인과의 차별(18.1%), 한국인노동자와의 갈등(14.9%), 한국인 직장상사와의 갈등(8.7%), 산업재해(8.1%) 등이다. 즉 노동시간, 임금수준, 인종적 갈등이 불만의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7>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생활 문제

(단위: %, N=309)

직장생활에서의 문제	%
① 장시간 노동	63.8
② 저임금	41.1
③ 체불 임금	23.6
④ 열악한 작업 조건	21.7
⑤ 육설이나 모욕적인 언사	19.4
⑥ 한국인과의 차별	18.1
⑦ 한국인 노동자와의 갈등	14.9
⑧ 한국인 직장 상사와의 갈등	8.7
⑨ 육체적 폭력: 구타	8.4
⑩ 산업 재해	8.1
⑪ 직업병	7.1
⑫ 기타	6.5
⑬ 사장과의 갈등	5.8
⑭ 육체적 폭력: 뺨을 때린다	5.5
⑮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	3.6
⑯ 육체적 폭력: 성적 희롱	3.2
⑰ 육체적 폭력: 괴롭힌다	3.2
⑱ 육체적 폭력: 발로 걷어찬다	2.6
⑲ 여러 가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	1.9

주: 세 가지 복수 선택. 총 300%.

직장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보면, “직장을 옮기거나”(31.4%), “사장에게 해결을 호소하기도 하고”(28.1%), “그냥 참고 견딘다”(23.1%) 등으로 나타나 개인적으로 참고 견디고, 사용자의 온정을 기대하다가 안되면 도망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노조에 도움을 요청”(12.0%) 하는 등의 조직적인 해결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조사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인한 이직 횟수는 1번이 27.7%, 2~3번이 16.5%, 4번 이상이 4.6%로 모두 48.8%에 달한다. 약 과반수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임금체불을 감수하면서 이직을 한 것이다.

애로 사항으로 호소된 순위는 낮게 나타났으나 산업재해를 겪었던 사례를 보면, ‘본인’이 27.5%, ‘동료 외국인 노동자’가 17.9%로 나타나고 있어(<표 8> 참조), 대략 외국인 노동자의 30~40%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산재를 경험하였다.

<표 8> 산업재해 피해 현황

(단위: %, N=313)

산업재해 피해 현황	%
내가 다친 적이 있다	27.5
동료 외국인 노동자가 다친 적이 있다	17.9
동료 한국인 노동자가 다친 적이 있다	12.5
아무도 다친 적이 없다	50.2

주: 복수 선택.

### 1) 노동 조건

산업기술연수생들의 월 급여는 기본급이 미화 210~260달러로 계약되어 있고(<표 9> 참조), 초과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내 생산직노동자의 급여 수준의 절반 정도이나, 자국의 임금수준에 비하면 꽤 높은 편이다. 한편, 불법체류자들의 임금수준은 상시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업종의 성격을 반영하여 시장임금에 근접하고 있다.<sup>6)</sup>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수준은 1992년에 30만 원 정도(설동훈, 1992b)이던 것이 1993년에는 50만 원대로, 1994년에는 60만 원대로 상승하였다.

<표 10>에서 보듯이, 비교적 좋은 노동조건을 따라 직장을 옮겨 다닐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는 지정된 기업에 묶여 있는

<표 9> 출신 국가별 산업기술 연수 수당, 1994년

(단위: 달러)

중국·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파키스탄·베트남	스리랑카·네팔	방글라데시
260	250	230	210	200

자료: 노동부, 1994.

6) 물론 그들이 취업한 3D 업종 자체가 저임업종이므로 국내노동자 전체의 임금수준 보다는 낮다.

산업기술연수생과 노동시간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총수입은 두 배에 이른다. 이러한 격차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표 11>의 결과도 일치한다. 수입규모는 소비규모와 본국으로의 송금액에도 영향을 미쳐 역시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도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교포들은 80만 원대이지만 기타 외국인들은 50만원 대이다. 이러한 임금격차가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사업체를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되는 유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10>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여가시간, 임금·소비·송금액

(단위: 시간, 원)

구분		하루 노동시간	하루 여가시간	월평균 수입	월평균 소비	월평균 송금
법적	불법체류자(N=325)	11.0	3.6	628,969	196,191	322,398
	산업연수생(N=68)	10.6	4.1	310,043	87,705	121,082
법·민족	교포불법체류자(N=104)	10.9	4.6	829,608	241,611	219,444
	기타불법체류자(N=221)	11.0	3.3	574,829	182,861	343,577
	산업기술연수생(N=68)	10.6	4.7	310,043	87,705	121,082
출신국가	중국교포(N=105)	10.9	3.5	829,608	241,611	219,444
	필리핀(N=84)	10.5	4.2	483,404	150,317	297,246
	방글라데시·파키스탄(N=51)	11.6	5.2	532,240	174,255	325,077
	네팔(N=112)	10.8	4.4	560,566	176,765	333,256
	기타(N=37)	11.0	1.9	452,258	128,250	168,971

<표 11> 남자 산업연수생과 불법체류자의 고용비용 비교(1993년 10월)

(단위: 개, 시간, 원)

구분	고용 기업 수	주당 노동시간	평균 임금	추가비용	총 고용비용
산업연수생	31	54.8	345,000	141,500	486,500
불법체류자	21	56.2	419,300	120,900	540,200

자료: 송병준, 1994.

산업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임금수준이 내국인 노동자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동일한 일을 하는 한국인 노동자들과 비교할 때, 작업능

률면에서 “차이가 없다”(48.5%)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낫다”(34.0%)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한국인과 외국인간에 “임금격차가 크게 존재한다”(78.9%)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격차의 원인에 대하여, “한국인의 숙련수준이 높기 때문에”라고 보는 사람들은 30.7%이고, 나머지 69.3%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차별받고 있다”고 반응한다.

한편, 내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표 12>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해서는 “높다” 11.9%, “적당하다” 25.0%, “낮다” 63.2%로 ‘임금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높다” 30.7%, “적당하다” 34.4%, “낮다” 34.9%로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다.

<표 12>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수준’에 대한 내국인 노동자의 평가

(단위: %, N=2,470)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수준	산업기술연수생	불법체류자
매우 높다	4.7	11.4
높은 편이다	7.2	19.3
높지도 낮지도 않다	25.0	34.4
낮은 편이다	45.0	26.0
매우 낮다	18.2	8.9
계	100.0	100.0

그러면 내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파악하고 있을까? <표 13>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실수령액에 회사에서 그들에게 제공한 주거비·식비를 가산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수준을 내국인 신입자의 임금수준과 비교할 때 몇 % 정도가 가장 좋은지를 제시하도록 한 결과이다. 외국인 노동자 각 범주별 최빈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중국교포 산업기술연수생의 경우 “내국인 노동자 임금수준의 70~

79%가 적당하다”는 견해가 24.2%로 가장 많지만, 나머지 기타 외국인 산업 기술연수생과 모든 불법체류자는 “내국인 노동자 임금수준의 50~59%가 적당하다”는 견해가 32.4~46.6%에 달하고 있다.

<표 13> 내국인 노동자들의 ‘외국인 노동자의 적당한 임금수준’ 평가  
(단위: %, N=1,747)

내국인 노동자 초임 대비 적당한 임금수준	산업기술연수생		불법체류자	
	중국교포	기타 외국인	중국교포	기타 외국인
50~59%	22.7	32.4	42.2	46.6
60~69%	18.5	22.2	14.0	16.7
70~79%	24.2	18.1	18.3	14.6
80~89%	19.2	15.4	14.2	11.7
90~99%	4.7	3.5	3.8	3.3
100%	10.7	8.4	7.6	7.1
계	100.0	100.0	100.0	100.0

또한 ‘같은 업체에 취업중이면서 같은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내국인 신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평가하게 한 결과에서도 임금격차의 존재를 당연시하는 입장이 52.5%로 나타나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다. ‘내·외국인 동등대우의 원칙’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노동자들은 25.4%에 불과하고, 22.1%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조사대상 내국인 노동자들이 실제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일한 경우가 거의 없었으므로, 이는 사회 일반의 통념이 그대로 내국인 노동자들의 인식 가운데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2) 노동·생활 만족도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서의 직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을까? 외국인 노동자들은 ‘현재의 직장생활’과 ‘주거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약간 높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4).<sup>7)</sup> 또한 ‘현재 하고 있는 일’과

‘한국에서의 생활전반’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난다(<표 14> 참조).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과 생활에 대하여 모두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렵게 한국에 입국하여 일하고 있다는 자신의 현재의 여건을 과거 본국에서의 자신(혹은 현재 본국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와 비교하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즉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을 본국(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 체류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14> 노동·생활 만족도

(단위: %, N=323)

구분	노동 만족도	생활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5.9	9.0
만족한다	33.4	38.0
다소 만족하는 편이다	22.0	20.4
만족도 불만도 아니다	19.8	19.4
다소 불만인 편이다	7.7	6.5
불만이다	8.4	4.3
매우 불만이다	2.8	2.5
계	100.0	100.0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준거집단은 단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에서 일단 일하게 되면 내국인 노동자의 대우를 염두에 두게 되고, 또 산업기술연수생은 (최소한) 자국인 불법체류자와 자신을

7) 직장생활에 만족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그 주된 이유로 “회사 관리자와의 사이가 좋거나” “임금이 많아서”를 들고 있고, 반대로 불만족인 경우는 그 이유로 “임금수준이 낮다”거나 “하는 일이 힘들어서”를 지적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의사소통, 동료관계, 직장상사, 기술습득, 일의 내용, 노동시간, 임금수준 등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해볼 때, 이 중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직장동료와의 관계”이고, 그 다음은 “기술습득”과 “직장상사” “일의 내용”的 순이다. 반면,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임금”이고, 다음이 “노동시간”과 “한국인과의 의사소통”的 순이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4).

비교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여, 중국교포의 준거집단은 연수생이나 불법체류자이든간에 모두 내국인이고,<sup>8)</sup> 기타 외국인연수생의 준거집단은 자국인 불법체류자들이다.

<표 15> 체류 자격별·출신국가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활만족도

구분 만족도	체류 자격			출신 국가				
	중국교포 불법체류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산업연수생	중국교포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기타
현재의 일 생활 전반	0.69 0.60	0.89 1.26	0.27 0.59	0.69 0.60	0.86 1.13	0.98 1.13	0.78 1.16	0.29 0.42
조사 대상자수(N)	104	221	68	105	84	51	112	37

주: 만족도 점수는 “매우 만족한다”에 3점, “만족한다”에 2점, “다소 만족하는 편이다”에 1점, “만족도 불만족 아니다”에 0점, “다소 불만족인 편이다”에 -1점, “불만족”에 -2점, “매우 불만족”에 -3점의 값을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이러한 준거집단의 다원성 때문에 집단간의 노동·생활 만족도 차이가 빨라지게 된다. 불법체류자보다 산업기술연수생이, 기타 외국인 노동자보다 교포가 한국에서의 노동과 일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낮다. 연수생과 교포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불만족이 큰 것은 각각 불법체류자와 내국인보다 못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3) 노동조합과의 관계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단행동에 나선 경우는

8) 이문열(1994: 30)의 소설 「아우와의 만남」에 기술된, 한국에서 취업한 적이 있는 한 중국교포의 발언이 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막노동판에서 남한노동자들과 임금수준이) 비슷하지는 않았습니까?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에서 온 사람들은 남한노동자 절반도 못 받는다던데요.” [...] “그것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대요? 그래도 명색이 한 풋줄 한 거예인데, 아무리 오래 떨어져 살았다지만...” “[...] 공장에 가서 일하려니, 세상에 필리핀 애들하고 같이 주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말을 못 알아듣나, 개들같이 게으름을 피우나, 세상에 같은 동포끼리...”

아직 거의 없다. 단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1994년 1월 산업재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실에서 농성한 사건과 네팔인 노동자들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의 모순을 지적하며 1995년 1월 명동성당에서 농성한 사건이 거의 유일한 설정이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에서도 중요한 노동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여 노동운동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자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표 16>을 보면 응답자들이 취업한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곳은 12.5%에 불과하다. 과거 본국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28.7%에 달하지만,<sup>9)</sup> 현재 한국에서 정식 조합원은 아닐지라도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4.3%에 그치고 있다. 노동조합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는 8.7%이고,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상담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8.5%이다. 자신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사장이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8.0%에 불과하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밝힌 외국인 노동자는 60.9%에 달한다.

<표 16>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

(단위: %, N=248)

노동조합 관련문항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계
회사에 노동조합 설립	12.5	39.2	48.3	100.0
노동조합 가입	4.3	84.1	11.6	100.0
과거 본국에서 노동조합원 경험	28.7	64.8	6.5	100.0
노동조합으로부터 도움 받은 경험	8.7	82.9	8.3	100.0
노동조합과 상담한 경험	8.5	80.5	11.0	100.0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두려움	19.4	60.9	19.8	100.0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사장의 인정	8.0	37.0	55.0	100.0

9) 중국교포 응답자의 50.0%가 노조원이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농민과 자영업자 및 실업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취업자(社會勞動者)가 노동조합(工會)의 구성원이 된다(설동훈, 1993b 참조).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응답자의 85.5%는 자신들이 불법체류자(69.6%)이거나 산업기술연수생(15.9%)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기타 사소한 이유로는 “우리 회사 사장이 싫어하기 때문에”(2.8%)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2.1%)가 지적되었다. “노동조합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는 4.5%에 불과하다.

외국인 노동자가 조직화될 가능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누가 귀하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35.3%는 “기꺼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1.9%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을 조직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34.6%는 “사태를 기다리며 지켜보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나머지 28.2%만 “가입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입하지 않겠지만 노동조합에 관심 있다”는 반응이 20.4%이다.<sup>10)</sup> 전체적으로 단결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노동운동에 대한 참가의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귀하가 다니는 직장의 노동조합이 어떤 이유로 파업을 감행한다면, 귀하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반응이 41.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절대로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반응으로 29.0%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16.7%는 “쟁점이 나와 관련된 것일 때 파업에 동참하겠다”라고 응답하였고, 10.0%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합당할 때는 파업에 동참하겠다”라고 밝혔으며, 2.6%는 “어떤 쟁점이라도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직 한국의 노동운동이 자기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층이 제일 많지만, “실익이 가시화되면 참가하겠다”는 잠재적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하

10) 나머지 7.8%는 “노동조합 자체에 반대하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겠다”(4.1%)와 “노동조합에 관심이 없으므로 가입하지 않겠다”(3.7%)의 두 가지이다.

여 내국인 노동자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국교포나 외국인 노동자를 자신이 취업중인 업체의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방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질문하였다.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국인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에 반대한다. 여기에는 응답자들의 가지고 있는 이질감에 덧붙여 횡단적 단결의식이 취약한 기업별 노조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7> ‘외국인 노동자의 노조 가입’에 대한 내국인 노동자들의 태도  
(단위: %, N=2,271)

외국인 노동자 노조가입에 대한 찬성·반대 정도	산업기술연수생		불법체류자	
	중국교포	기타외국인	중국교포	기타외국인
매우 찬성한다	9.6	7.2	5.2	5.0
찬성하는 편이다	16.7	13.3	7.5	6.3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20.1	20.6	17.9	16.4
반대하는 편이다	30.6	30.8	36.9	34.7
매우 반대한다	23.0	28.0	32.5	37.5
계	100.0	100.0	100.0	100.0

#### 4) 주거와 여가활동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본 조사의 응답자들은 회사 기숙사(55.6%)나 셋방(18.5%)에 주로 거주한다. 체류 자격별로 그들의 숙소는 확연히 구분되는데, 중국교포는 셋방(33.9%)이나 셋집(14.3%), 또는 작업장·공장(21.4%)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지만, 기타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산업기술연수생은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단연 높다(각각 64.0%, 68.3%). 방의 규모는 대략 폭 3.23m 길이 4.16m ( $14.25m^2$ )정도인데, 한 방에 평균 3.94명이 거주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평일과 휴일에 여가를 활용하는 유형이 <표 18>에 제시되어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TV를 보거나 잠자고, 목욕하고, 음악을 듣거나, 친구에게 놀러 가는 등으로 그들의 여가를 보낸다. 평일과 휴일의

<표 18> 평일과 휴일의 여가 활용

(단위: %, N=325)

평일의 일과 후 여가 활용	일요일·휴일의 여가 활용
72.0 텔레비전을 본다 ▲	60.7 텔레비전을 본다 ▽
63.7 잠잔다 ▲	57.6 친구에게 놀러 간다 ▲
55.7 목욕한다 ▲	53.9 목욕한다 ▽
50.8 음악을 듣는다 ▲	52.6 잠잔다 ▽
44.3 친구에게 놀러 간다 ▽	46.1 교회·이슬람사원·절에 간다 ▲
40.0 신문을 읽는다 ▲	43.6 음악을 듣는다 ▽
37.5 한국 노래를 배운다 ▲	43.0 쇼핑을 한다 ▲
36.3 교회·이슬람사원·절에 간다 ▽	36.1 신문을 읽는다 ▽
33.8 쇼핑을 한다 ▽	34.9 한국 노래를 배운다 ▽
26.2 산책한다 ▽	30.8 비디오를 본다 ▲
24.6 비디오를 본다 ▽	29.6 산책한다 ▲
23.4 술을 마신다 ▽	28.0 관광한다 ▲
22.8 운동을 한다 ▽	26.5 술을 마신다 ▲
20.6 관광한다 ▽	24.0 운동을 한다 ▲
17.2 놀이공원에 간다 ▽	23.1 놀이공원에 간다 ▲
16.6 노래방에서 노래한다 ▽	20.9 노래방에서 노래한다 ▲
16.6 영화 보러 간다 ▽	18.4 영화 보러 간다 ▲
12.6 전자 오락을 한다 늦	15.6 여행한다 ▲
12.6 기타 ▽	13.8 기타 ▲
11.1 여행한다 ▽	12.5 전자 오락을 한다 늦
8.0 근교를 드라이브한다 ▽	11.5 근교를 드라이브한다 ▲
7.1 데이트한다 ▽	9.7 도박을 한다 ▲
6.8 도박을 한다 ▽	9.0 데이트한다 ▲

▲ 우월 ▽ 열등 늦 유사

차이를 분석하면, 평일에는 주로 정적이고 소극적인 활동을 하는 반면, 휴일에는 그나마 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 5) 외국인 노동자의 상태 개선 방안

<표 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들은 가장 중요한 개선 사항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혜택”을 꼽고 있다(76.8%).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확충”(57.7%)과 “지방 관서에 상담소 또는 민원 센터의 설치”(47.1%)가 필요하다고 보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33.8%)도 중요한 방안으로 꼽고 있다. 이는 <표 7>에서 제시된, 가시화된 문제 이외에도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며 제도적인 보호대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19>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상태 개선을 위해 중요한 것

(단위: %, N=272)

생활상태 개선을 위해 중요한 것	%
① 산업 재해 보상 보험 혜택을 부여한다	76.8
②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57.7
③ 지방 관서에 상담소 또는 민원 센터를 설치한다	47.1
④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다	33.8
⑤ 구직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7.2
⑥ 공무원의 서비스를 개선한다	14.3
⑦ 한국인 친구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3.6
⑧ 주거·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1.0

주: 세 가지 복수 선택. 계 300%.

### 6. 내국인 노동자의 상황 인식

현재까지 내국인의 취업기피 부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고 있으므로 고용기회나 소득의 배분을 둘러싼 내·외국인 노동자간의 마찰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애로가 노동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제도화된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상황인식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내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표 20>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교포들의 취업에 대해서는 34.2%가 찬성하고 40.2%가 반대하여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기타 외국인들의 취업에 대해서는 찬성 13.1%, 반대 63.8%로 반대하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많다. 체류 자격별로는 산업기술연수생의 국내 취업에 대해서는 찬성 38.5%, 반대 38.6%로 찬반 비율이 백중하며, 불법 체류자들의 국내 취업에 대해서는 찬성 3.0%, 반대 82.9%로 거의 대부분이

<표 20>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취업'에 대한 내국인 노동자들의 태도  
(단위: %, N=2,482)

국내 취업에 대한 찬반 정도	민족		체류 자격	
	중국 교포	기타 외국인	산업 연수생	불법 체류자
매우 찬성한다	7.5	1.6	7.1	1.1
찬성하는 편이다	26.7	11.5	31.4	2.9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25.6	23.1	23.0	13.2
반대하는 편이다	25.7	36.6	22.1	31.9
매우 반대한다	14.5	27.2	16.5	51.0
계	100.0	100.0	100.0	100.0

반대하고 있다. 즉 산업기술연수생과 중국교포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외국인의 국내 취업에 대하여 우려하는 점을 세 가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표 21>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3.0%가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실업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내국인의 취업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외국인들의 범죄(47.8%)·산업재해(43.5%)·체불임금(33.1%), 외국인들 대상의 내국인 범죄(32.6%), 외국인들의 장기 체류(27.5%)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표 21>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야기할 사회문제'에 대한 내국인 노동자들의 평가  
(N=2,111)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야기할 사회문제	%
①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실업 문제	73.0
② 외국인들의 범죄 문제	47.8
③ 외국인들의 산업 재해 문제	43.5
④ 외국인들의 체불 임금 문제	33.1
⑤ 외국인들 대상의 내국인 범죄 문제	32.6
⑥ 외국인들의 장기 체류 문제	27.5
⑦ 외국인들의 건강 문제	24.3
⑧ 외국인들의 가족과 관련된 문제	15.2

주: 세 가지 복수 선택. 계 300%.

그러면, 취업 시장에서의 경합 문제를 내국인 노동자들이 과연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알아 보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취업이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결과 "매우 많이 잠식한다"가 28.7%, "약간 잠식하는 편이다"가 53.7%로 나타났다. 내국인 노동자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자신들의 고용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꽤 많이 잠식할 것'으로 보는 내국인 노동자들의 두려움은 현실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하고 있는 부문은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여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sup>11)</sup> 다시 말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도둑'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노동시장의 빈자리를 메워 주는 일꾼으로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 7. 맷음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는 작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소개받아, 다시 이들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량 관찰 조사는 배부된 설문지를 본인이 기입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집단면접을 통해 사정을 청취하는 방식도 병행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국적은 중국교포, 필리핀·방글라데시·파akistan.

11) 이러한 평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처럼 영세 및 중소 규모 '3D 업종'에 국한되어 취업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 그러나 만약 연수생을 도입하는 업종이 대폭 확대되거나 한국 노동시장이 전면 개방되어 외국인노동력이 대거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내국인 노동자들의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성이 크다.

네팔 등이며, 불법체류자와 산업기술연수생을 모두 포함하였다. 이들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은 제조업뿐 아니라 건설업과 서비스업 및 농림수산업도 발견되지만, 한마디로 인력난이 매우 심한 곳으로 요약된다. 또한 이들의 직종은 미숙련 생산직노동자 내지 단순노무자가 대부분이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개인적 특성을 보면 고교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 중간층 귀속의식이 높은 20~30대의 청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다만 중국에서 온 교포 응답자들은 40대의 장년층이었다. 성별 구성을 보면 필리핀과 중국교포를 제외하고는 남성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출신 지역이 기본적으로 농업사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도시 출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이전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중국교포를 제외하고는 도시 출신의 약 반수 이상이 이농을 경험하였다. 또한 본국에서 실업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약 20% 수준에 불과하였다. 한국까지의 이동 경로를 보면 중국과 필리핀 출신을 제외하고는 과반수 이상이 다른 나라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으며 해외 여행 경험에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이 보인다. 특히 필리핀인의 경우에는 한국을 떠나게 되었을 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제3국으로 가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53.5%에 달해 다른 지역 출신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한국에 취업하기 위해 평균 1천 5백 달러에서 2천 6백 달러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응답자들은 사회적 최하층이 아니라 국제 이동에 필요한 지식과 지원을 동원할 수 있는 가진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응답자들이 해외 취업에 나선 이유를 보면 경제적 이익 확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새로운 경험을 쌓거나 지식·기술의 습득이 가능한 기회를 추구하려는 것이 동기로 되어 있다. 한국에 온 이유를 보면 ‘높은 임금수준’보다 ‘취업과 입국 기회의 용이성’이나 ‘친척·친지의 소개’와 같은 네트워크의 존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수준’을 지적한 응답자는 전체의 13% 수준이며, ‘친근감’도 비슷한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정보의 주요 입수원으로서는 ‘한국 여행 경험자

의 말’ ‘대중매체의 영향’ ‘국제 스포츠 행사’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취업에 대한 정보는 주로 친척·친지, 직장동료, 이웃 등과 같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입수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유입되는 과정을 이해하려면 객관적인 임금 격차에 덧붙여 정보의 유통과 취업 소개망을 파악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조사자료에서 나타난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를 보면 노동상담의 주요 대상인 ‘임금체불’보다 ‘장시간 노동’ ‘저임금’ ‘욕설·모욕·폭력’ ‘한국인노동자와의 차별과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작업장의 열악성이 임금체불과 비슷한 수준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응답자의 30~40% 정도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산업재해를 경험하였다는 점에서도 취업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이나 공사장의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나타난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문제해결 행동은 직장에서 이탈하거나 사장에게 호소하지 않으면 참고 견디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조를 비롯한 제도화된 통로가 외국인 노동자와는 무관한 존재가 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응답자들의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배정된 업체에 긴박되어 있는 산업기술연수생은 월 210~260달러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입국하였으며, 노동시장의 저변에서 유동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는 시장가격에 근접한 월 평균 6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산업기술연수생이 지정된 직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로 전화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하루의 노동시간은 10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응답자의 다수는 외국인이 한국인과 비교하여 업무수행 능력에서 손색이 없지만 차별대우를 받아 부당하게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사에 응답한 내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내·외국인간의 임금격차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오히려 사회 일반의 통념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극단적으로 낮은 산업기술연수생의 임금수준은 당장에는 중소기업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효과를 발휘하여 한국의 “국제경쟁력”에 이바지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업주들의 산업구조 조정과 생산성 향성을 위한 노력을 계울리하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점, 내·외국인간의 임금격차의 지속적 존재 때문에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유발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저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노사 양측에게 모두 해로울 수 있다. 또한 노동착취 국가는 대외적 이미지 실추를 초래할 것인데, 이는 해외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블루라운드라고 불리우는 국제적 노동조건의 평준화를 지향하는 흐름에서 한국이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산업기술연수생들의 임금은 내국인 노동자와 같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시장 임금에 근접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임금과 동등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느끼고 있는 직업과 생활 전반에 대한 감각은 미약하지만 만족하고 있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기술연수생과 중국교포는 다른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관심사는 임금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만족과 불만족의 상반된 입장이 뒤섞여 있다. 여기에서도 일단 고임금지역에 취업하는 목표를 달성한 것에서 오는 성취감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의 한국생활에 대한 불만도 쌓여 가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변인(marginal man)적 입장은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조에 호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참거나 사용자에게 개인적으로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조직화의 잠재적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내국인 노동자 사이에서도 여론의 영향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한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될 가능성을 느끼는 분위기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한국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국제 노동력 이동 과정에서 유입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노사관계를 국제적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하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호소하고 있는 고충과 애로 사항은 한국의 하층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보편적 기준에 입각하여 국내 노사관계의 합리화라는 차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함의를 찾을 수 있다.

### ● 참고문헌

- 경제기획원. 1990a, 『일본의 외국인력 고용에 관한 연구』.  
\_\_\_\_\_. 1990b, 『산업인력 수급대책: 제조업부문의 인력난 타개방안』.  
김용삼. 1995, 「조선족 밀입국자들의 남서해안 상륙작전」, 『월간 조선』 179.  
김진수. 1994, 「외국인근로자의 현황과 대책」, 『국제노동질서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노동부. 1992,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면 등에 끼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보고서』.  
\_\_\_\_\_. 1993a,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정책적 과제: 주요 수입국의 정책실태에 대한 비판적 검토』.  
\_\_\_\_\_. 1993b, 『일본의 외국인 고용에 관한 질의·응답집』.  
노동부 고용정책과. 1995, 『외국인력 현황과 대책』.  
노동부 외국인력정책연구반. 1994, 『단순기능 외국노동력의 국내취업에 관한 정책대안』.  
박래영. 1993,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관한 조사연구」, 『노동경제논집』 16.  
박석운. 1994a,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어찌할 것인가: 그들의 인권 무시하면 국제화 시대에 나오한다」, 『월간 중앙』 216.  
\_\_\_\_\_. 1994b, 「한국에 있어서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와 대책」, 『법치주의와 약자·소수자·피해자 보호』,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박영범. 1990,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국경간 노동력 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_\_\_\_\_. 외. 1994, 『외국인력의 활용과 정책과제』, 중소기업연구원.  
박호환. 1992, 「외국노동자 고용의 경제적 효과: 국내 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노사관계연구』 3.

- 백석현. 1991, 「황해경제권의 국제노동이동 모형」, 『황해권(남북한·중국)의 국제경제협력 구상』,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 . 1993, 「해외노동력 유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 상공자원부 산업진흥과. 1994,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인력 실태 및 개선방안』, 상공자원부.
- 서울노동운동연구소. 1992, 『외국인 불법 고용,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노동운동연구소.
- 설동훈. 1992a, 「한국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노동자」, 《경제와 사회》 15(가을).
- . 1992b, 「국제노동력 이동과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 『한국의 지역문제와 노동계급』(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제37집), 문학과 지성사.
- . 1993a,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와 현황」,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의 발표논문.
- . 1993b, 「인구와 노동력」, 장경섭 편, 『현대 중국사회의 이해』, 사회문화연구소.
- . 1994a, 「국제노동력 이동과 외국인의 한국내 취업」, 《사회문화연구》 2.
- . 1994b, 「국내 거주 이민노동자의 생활실태」, 《포럼21》 10(여름).
- . 1994c, 「이민노동자의 국내 취업에 대한 태도」, 안양노동정책교육실, 『경기남부 자동차업종 종합실태조사』, 경기남부 자동차업종 노조회의(준비위).
- 송문홍. 1992, 「외국인 노동자 불법취업」, 《신동아》 35(2).
- 송병준. 1993a, 『산업인력의 수급원활화 방안: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 1993b, 『3D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단기 대책』, 산업연구원.
- . 1994, 『외국인력 문제의 실태와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995, 『외국인 취업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이문열. 1994, 「아우와의 만남」, 『아우와의 만남: 중단편집 5』, 도서출판 등지.

- 이민원. 1993,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연구: 필리핀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육정. 1994, 「국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와 적응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혜경. 1994a,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28(가을).
- . 1994b, 「아시아 지역 내 노동이동과 정책적 대응」, 이화사회학연구회 편, 『일상의 삶 그리고 복지의 사회학』, 사회문화연구소.
- 정장연. 1992, 「NIEs 현상과 한국자본주의: 한국 선진국화의 실상과 허상」, 《창작과 비평》 20(3).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4a,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협력사업 운용요령』.
- . 1994b, 『섬유신발업종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협력사업 운용요령』.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기술연수협력단. 1994a, 『연수생 관리자 숙지사항』.
- . 1994b, 『연수자 핸드북 1994-1995』.
- . 1994c,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 협력사업의 현황』.
- . 1995a, 『네팔 연수생 명동성당 농성 관련 자료』.
- . 1995b, 『1995년 1월 16일 기자 간담회 자료』.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4,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보고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994,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1993, 『외국인 노동자와 인간의 기본권』.
- 한국해외개발공사. 1988, 『일본의 외국인력 고용제도와 진출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
- 한백연구실. 1994, 「노동시장 개방의 문화적·파장: 델파이 조사」, 《포럼21》 10(여름).
- 황승연. 1994, 「중국동포들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아태연구》 1.
- 森田桐郎(Morita, Kirirou) 編. 1987, 『國際勞動力移動』,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鈴木宏昌(Suzuki, Hiromasa). 1990a, 『國際化時代の労動問題』, 東京: 日本労動研究機構.

- \_\_\_\_\_. 1990b, 「外國人労働者流入の諸問題: 西歐の事例の限界について」, 『日本の企業と外國人労働者』, 東京: 御茶の水書房.
- 熊澤誠(Kumazawa, Makoto). 1990, 「日本企業と外國人労働者: 研究方法からみた報告と討論」, 『日本の企業と外國人労働者』, 東京: 御茶の水書房.
- Abella, Manolo, I. 1991, "Structural Change in Labor Migration within the Asian Region," *Regional Development Dialogue* 12(3).
- Appelbaum, Richard P. and Gary Gereffi. 1994, "Power and Profits in the Apparel Commodity Chain," in Edna Bonacich, Lucie Cheng, Norma Chinchilla, Nora Hamilton, and Paul Ong(eds.), *Global Production: The Apparel Industry in the Pacific Rim*,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Averitt, Robert T. 1967, *The Dual Economy: The Dynamics of American Industry Structure*, New York: Norton & Company.
- Burawoy, Michael. 1976, "The Functions and Reproduction of Migrant Labor: Comparative Material from Southern Africa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5).
- Castells, Manuel. 1975, "Immigrant Workers and Class Struggles in Advanced Capitalism: The Western European Experience," *Politics and Society* 5(1).
- Castles, Stephen and Godula Kosack. 1972, "The Function of Labor Immigration in Western European Capitalism," *New Left Review* 73.
- \_\_\_\_\_. 1985, *Immigrant Workers and Class Structure in Western Europe*, Seco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oeringer, Peter B. and Michael J. Piore. 1971,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Lexington: D. C. Heath & Company.
- Gibson, Katherine and Julie Graham. 1986, "Situating Migrants in Theory: The Case of Filipino Migrant Contract Construction Workers," *Capital and Class* 29.
- Gordon, David M., Richard Edwards and Michael Reich. 1982, *Segmented Work, Divided Workers: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Labor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e, Chongkoo. 1994, "Illegal Foreign Workers and Labor Movement in Korea,"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rade Unionism at the Current Stage of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of Economy*, Faculty of Economics, Saitama University in Urawa, April 8.
- Massey, Douglas S., Joaquín Arango, Graeme Hugo, Ali Kouaoui, Adela Pellegrino and J. Edward Taylor.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9(3).
- \_\_\_\_\_. 1994, "An Evaluation of International Migration Theory: The North American Cas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0(4).
- Pang, Eng Pong. 1993, *Regionalisation and Labour Flows in Pacific Asia*, Paris: Development Center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Park, Young-bum. 1994, "The Turning Point i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3(1).
- Piore, Michael J. 1979, *Birds of Passage: Migrant Labor and Industrial Socie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ssen, Saskia. 1988, *The Mobility of Labor and Capital: A Stud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Labor Flo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